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9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 민형배·서미화·정동영

이개호 • 백혜련 • 이수진

정성호 · 이용선 · 장경태

남인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기구득기관·조직기증지원기관의 뇌사추정자, 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기록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현재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의무기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서류 발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발급시간·대상자 제한 등 행 정상 제약 때문입니다. 서류 절차 지연은 장기 기증·이식 시기까지 놓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.

이에 장기구득기관의 전문 의료인,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료인이 뇌사추정자·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. 불필요한 절차 지연해소로 장기·인체조직의 성공적 기증·이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21조제3항제20호 및 제21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589호) 및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591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3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0.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6항에 따라 장기구득 전 문 의료인이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의무기록에 대한 열 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
- 21.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조직기증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1조(기록 열람 등) ①・② (생	제21조(기록 열람 등) ①・② (현		
략)	행과 같음)		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,	③		
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			
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		
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			
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			
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			
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사・			
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			
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			
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			
아니하다.			
1. ~ 19. (생 략)	1. ~ 19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20.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		
	률」 제20조제6항에 따라 장		
	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뇌사추		
	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의		
	무기록에 대한 열람 또는 사		
	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		
<u><신 설></u>	21.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		
	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제1		
	1항에 따라 조직기증지원기관		

	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조직
	기증 적합성 판단을 위하여
	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
	교부를 요청하는 경우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